

#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

1998. 7.22  
교육사회위원회

## 1. 제안자 : 충청북도교육감 제출

## 2. 제안 및 회부일자

- 제안 : 1998년 7월 14일 제출
- 회부 : 1998년 7월 14일

## 3. 제안 이유

종전에는 산업교육진흥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 산업교육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법 설치근거가 삭제되고,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도지사가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## 4. 주요 골자

조례안 폐지

## 5. 검토 의견

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산업교육심의회 설치권한이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
상위법개정(98.3)후 조례폐지(98.7)의 자연사유와 심의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임